

삿포로 가든 팰리스 숙박 약관

(적용 범위)

제 1 조 당 호텔(관)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,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법령 등(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것을 말함. 이하 동문)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.

2. 당 호텔(관)이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을 우선으로 합니다.

(숙박 계약의 신청)

제 2 조 당 호텔(관)의 고객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(관)에 통지해야 합니다.

(1) 고객의 성명

(2) 숙박 날짜 및 도착 예정 시각

(3) 숙박 요금(원칙상 별표 제 1의 기본 숙박료를 따름)

(4) 그 외 당 호텔(관)이 필요로 하는 사항

2. 고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1 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할 것을 신청할 경우, 당 호텔(관)은 해당 신청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
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
제 3 조 숙박 계약은 당 호텔(관)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할 때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. 단, 당 호텔(관)이 응하지 않을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.

2.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, 숙박 기간(3 일을 초과할 시 3 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 내에서 당 호텔(관)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(관)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

3. 예약금은 먼저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료에 충당되며,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,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, 잔액이 있을 시 제 12 조 규정에 따라 요금 결제시에 반환합니다.

4. 제 2 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(관)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, 숙박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당 호텔(관)이 그 취지를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
(예약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특약)

제 4 조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 호텔(관)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2.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따라, 당 호텔(관)이 전조 제 2 항의 예약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조 특약에 응한 것으로 합니다.

(시설의 감염방지 대책을 위한 협력 요구)

제 4 조 2 당 호텔(관)은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여관업법(1948년 법률 제

년 8 호)제 4 조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(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)

제 5 조 당 호텔(관)은 다음과 같은 경우,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단, 본항은 당 호텔(관)이 여관업법 제 5 조에 게재하는 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- (1) 숙박 예약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
- (2) 만실(원)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
- (3)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 숙박 관련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
- (4)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) 폭력단원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년 법률 제 77호)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(이하 '폭력단'이라 함), 폭력단에 준하는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
 - 나)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경우
 - 다) 법인 중 그 임원 구성원이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
- (5)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현저하게 해를 가하는 언동이 있을 경우
- (6)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여관업법 제 4 조 2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병 환자 등(이하 '특정 감염병 환자 등'이라 함)일 경우
- (7) 숙박 시 폭력적 요구 행위가 벌어지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스러운 일을 요구 받았을 시(숙박하려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(2013년 법률 제 65호. 이하 '장애자 차별 해소법'이라 함). 제 7 조 제 2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함)
- (8)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 호텔(관)에,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 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 5 조 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경우
- (9) 천재지변, 시설의 파손,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
- (10) 홍카이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 8 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
 - ①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술취하거나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이며,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술취하거나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이며,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 - ②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의 복장 또는 휴대품이, 현저하게 불결하고, 다른 숙박자의 위생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(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)

제 5 조 2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 호텔(관)에 당 호텔(관)이 전조에 의거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,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고객의 계약 해제권)

제 6 조 고객은 당 호텔(관)에 숙박 계약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당 호텔(관)은 고객의 귀책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

경우(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(관)이 예약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, 그 지불로 인해 사전에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시점을 제외합니다)는, 별표 제 2 에 게재한 항목에 의해 위약금을 받습니다. 단, 당 호텔(관)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그 특약에 응한 것에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시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, 당 호텔(관)이 고객에게 고지한 때 만에 한합니다.

3. 당 호텔(관)은 고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(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, 그 시각을 2시간 초과한 시간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시, 그 숙박 계약은 고객으로 인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

(당 호텔(관)은의 계약 해제권)

제 7 조 당 호텔(관)은 다음과 같이 게재한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. 단, 본항은 당 호텔(관)이 여관업법 제 5 조에 게재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

- (1) 고객이 숙박에 관해, 법령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시,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시
 - (2)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
 - 가)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
 - 나)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일 시
 - 다) 법인의 임원 중 폭력 단원이 소속되어 있을 시
 - (3) 고객이 타고객에게 현저하게 해를 가하는 언동을 가했을 시
 - (4) 고객이 특정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 일 시
 - (5)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되는 행위를 요구 받았을 시(고객이 장애자 차별 해제법 제 7 조 2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함)
 - (6) 고객이 당 호텔(관)에,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 5 조 6 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경우
 - (7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에 의한 숙박을 하지 못하는 경
 - (8) 훗카이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 8 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
 - ①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술취하거나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이며,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술취하거나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이며,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 - ②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의 복장 또는 휴대품이, 현저하게 불결하고, 다른 숙박자의 위생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- (9) 침실 내 잠자리에서의 흡연 행위, 소방용 시설 등에 하는 장난, 그 외 해당 호텔(관)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(화재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함)에 따르지 않을 경우
2. 당 호텔(관)이 전항의 규칙에 따라 숙박을 해제했을 경우, 고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
(숙박 계약 해제 설명)

제 7 조 2 고객은 당 호텔(관)에 대해 당 호텔(관)이 전조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(숙박 등록)

제 8 조 고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(관)의 프런트에서 다음 항목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

- (1) 고객의 성명, 주소 및 연락처
- (2) 일본 국내의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
- (3) 그 외 당 호텔(관)이 필요로 하는 사항

2. 고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하려고 할 시,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지불 방법에 필요한 것을 제시하셔야 합니다.

(객실의 이용 시간)

제 9 조 고객이 본 호텔(관)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 시부터 다음날 11 시까지입니다. 단, 연박하는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 가능합니다.

2. 당 호텔(관)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외의 객실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 계제한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.

- (1) 오후 2:00 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%
- (2) 오후 2:00 이후에는 객실 요금의 100%

(이용 규칙의 준수)

제 10 조 고객은 당 호텔(관)내에서 당 호텔(관)이 정하여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(영업시간)

제 11 조 당 호텔(관)의 주요 시설 등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 외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팜플렛, 곳곳의 게시, 객실내 서비스 목록 등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

- (1) 프런트 · 캐셔 등의 서비스 시간:

가. 통금…없음

나. 프런트 서비스…24 시간

- (2) 음식 등(시설) 서비스 시간 (시기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)

가. 조식 7:00A.M~10:00A.M (최종 입점 9:30 A.M)

나. 중식 11:30A.M~2:00P.M

다. 석식 요 확인

- (3) 부대 서비스 시간: 프론트 테스크에서 안내해드립니다.

2.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으로 안내해드립니다.

(요금의 지불)

제 12 조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 1 에 게재한 바에

따릅니다.

2.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, 통화 또는 당 호텔(관)이 적절하다고 여긴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, 고객의 출발 직전 또는 당 호텔(관)이 청구할 시, 프런트에서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당 호텔(관)이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이 가능해진 후, 고객이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.

(당 호텔(관)의 책임)

- 제 13 조 당 호텔(관)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한 계약 이행에 있어서,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합니다. 단, 그것이 당 호텔(관)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시 예외가 됩니다.
2. 당 호텔(관)은 만일의 화재 등을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.

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시의 처우)

- 제 14 조 당 호텔(관)은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, 고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동일 조건으로 타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.
2. 당 호텔(관)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타 숙박시설을 알선하지 못 했을 경우, 위 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고,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총 당합니다. 당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가 당 호텔(관)에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.

(위탁물 등의 취급)

- 제 15 조 고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은 소실, 훼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,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, 당 호텔(관)이 그 손해 배상을 합니다. 단, 현금 및 귀중품은 당 호텔(관)이 그 종류 및 가치를 명시할 필요로 한경우로, 고객이 이를 고지하지 않을 시 당 호텔(관)은 15 만엔을 한도로 손해 배상을 합니다.
2. 고객이 당 호텔(관)에 지참한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은, 당 호텔(관)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실, 훼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, 당 호텔(관)이 손해배상을 합니다. 단, 고객이 미리 종류 및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, 당 호텔(관)에 고의 또는 중재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 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(관)이 손해배상을 합니다.

(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)

- 제 16 조 고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(관)에 도착한 경우, 그 도착전에 당 호텔(관)이 수락한 경우만 한정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고 고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할 시에 전달합니다.
2.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(관)에 두고 가신 경우, 그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, 당 호텔(관)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과 요청을 요합니다. 단, 소유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시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발견된 날을 포함해 7 일간 보관하고, 그 후 근처 경찰서에 전달합니다.
 3. 전 2 항의 경우에 의한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은 당 호텔(관)의 책임은, 제 1 항의 경우 전조 제 1 항 규정에, 전항의 경우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

따르도록 합니다.

(주차의 책임)

제 17 조 고객이 당 호텔(관)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, 차량의 열쇠 위탁 여부에 상관없이, 당 호텔(관)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일 뿐,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단, 주차장의 관리 중 당 호텔(관)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끼친 경우,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.

(고객의 책임)

제 18 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(관)이 손해를 입은 경우, 해당 고객은 당 호텔(관)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.

별표 제 1 숙박요금 등의 내역(제 2 조 제 1 항 및 제 12 조 제 1 항 관계)

		내	역
고 객 이 지 금	숙 박 요 금	<p>① 기본 숙박요금(객실요금(및 객실요금 + 조식 등의 음식요금))</p> <p>② 서비스요금(①×10%)</p>	
불 해 야 할 금	추 가 요 금	<p>③ 추가음식(①에 포함된 것은 제외)</p> <p>④ 서비스요금 (③×10%)</p>	
총 액	세 금	소비세	

별표 제 2 위약금(제 6 조 제 2 항 관계)

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		노 쇼	당 일	전 날	9 일 전	20 일 전
예약 인원수						
일 반	1 4 인까지	100%	80%	20%	-	-
단 체	1 5 ~ 9 9 인까지	100%	80%	80%	30%	20%
	1 0 0 인 이상	100%	100%	80%	50%	20%

- (주) 1. %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.
2.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, 그 단축일수에 상관없이 1 일분(첫 날)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
3. 단체 손님(15 인 이상)의 일부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, 숙박 10 일 전(10 일 전보다 후에 예약을 인수한 경우, 그 인수일)의 숙박인원의 10%(끝수가 생긴 경우 반올림 할 것)에 해당하는 인원은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